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06. 2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춘 곤]

목 차

I. 검토경과	1
II. 제출근거	1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입·세출 처리상황	2
5. 일반회계 세입결산	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5
9. 계속비 결산	8
10. 예비비 지출	9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10
IV. 기금결산	11
V. 채권액결산	12
VI. 채무액결산	13
VII. 보조금결산	13
VIII. 기타 검토의견	14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9.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0. 6. 03.
- 상정일자 : 2020. 6. 22.(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의안번호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2020~48호)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2020~49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5)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860,087	879,262	673,600	205,662
일반회계	782,118	799,844	631,700	168,144
특별회계	77,969	79,418	41,900	37,518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860,087	883,311	879,262	326	3,723	102.2	99.5
일반회계	782,118	803,333	799,845	326	3,162	102.3	99.6
특별회계	77,969	79,978	79,417		561	101.9	99.3

3. 세출결산(결산서 p34)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755,661	104,426	860,087	673,600	105,556	5,569	75,362
일반회계	683,358	98,760	782,118	631,700	98,142	4,221	48,055
특별회계	72,303	5,666	77,969	41,900	7,414	1,348	27,307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7)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879,262	673,600	205,662	55,058	32,940	17,437	6,752	93,475
일반회계	799,845	631,700	168,145	51,738	31,317	14,967	5,403	64,720
특별회계	79,417	41,900	37,517	3,320	1,623	2,470	1,349	28,755

5.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2)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782,118	803,333	799,845	326	3,162
지방세수입	27,439	28,230	26,823	185	1,222
세외수입	11,983	23,867	21,789	140	1,938
경세외수입	7,382	10,732	10,694	0	38
임세외수입	4,601	13,135	11,095	140	1,900
지방교부세	280,864	288,873	288,873	0	0
조정교부금등	24,684	24,684	24,684	0	0
보조금	158,907	159,426	159,426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78,241	278,253	278,250	1	2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73)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782,118	631,700	98,142	4,221	48,055
의회운영위원회	997	870	0	0	127
총무위원회	433,619	385,675	9,922	1,981	36,041
산업건설위원회	347,502	245,155	88,220	2,240	11,887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347,502	245,155	88,220	2,240	11,887
산업건설 위원회	경제교통과	24,403	20,983	2,050	53	1,317
	안전총괄과	8,637	7,742	95	13	787
	산림과	41,172	26,387	12,718	300	1,767
	환경과	21,564	18,559	2,495	24	486
	건설과	87,332	50,428	35,089	18	1,797
	도시건축과	46,469	28,894	16,762	105	708
	농업기술센터	86,374	62,454	17,674	1,723	4,523
	수도사업소	29,205	28,622	140	4	439
	거창사건사업소	2,346	1,086	1,197	0	6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서 p19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 결 정 액 (A)	수 납 액 (B)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계	77,969	79,978	79,417	0	561
공 기 업	46,843	47,273	47,218	0	55
의 료 급 여 기 금	983	977	977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30	0	0
주 차 장 관 리	658	1,198	692	0	506
산업단지조성사업	5,435	5,441	5,441	0	0
수 질 개 선	5,575	5,580	5,580	0	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68	770	770	0	0
농업발전기금	17,677	18,709	18,709	0	0

○ 세 출(결산서 p19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반납 액	집행잔액 (D=A-B-C)
계	77,969	41,900	7,414	1,348	27,307
공 기 업	46,843	31,400	3,351	1,261	10,831
의 료 보 호 기 금	983	919	0	49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0	0	0
주 차 장 관 리	658	219	0	0	439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5,435	1,920	3,187	15	313
수 질 개 선	5,575	4,728	754	23	7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68	638	122	0	8
농 업 발 전	17,677	2,046	0	0	15,631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273)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276)

전 용(일반회계) - 결산서 p277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6건	3,557	1,384	1,384	

이 체(일반회계) - 결산서 p279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83건	98,449	98,449	

검 토 의 견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거창관광 홍보, 재해구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체(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의 최종구성 단위인 담당을 신설·변경·통합·폐지하고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기 위한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2018.12.26. 훈령 제426호)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9. 계속비 결산(3권-결산서 부속서류 p367)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25,789	10,762	16,596	53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1,657	118	1,539	0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002	1,074	1,928	0
덧시골 폭포 등산로 연결사업	843	825	0	18
거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756	644	112	0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864	821	8	35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692	596	96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4,066	5,239	8,827	0
권역 단위 종합 개발	1,718	638	1,080	0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193	124	69	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135	61	74	0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121	80	41	0
시군창의	608	493	115	0
취약지구개조(궁항지구)	1,135	49	1,086	0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621		1,621	0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4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301)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182	180	0	2
기획예산 담당관	규제개혁추진	규제개혁 및 소송관리	22	22		
농업기술 센터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과수 품질 향상	75	75		
	고식미 생산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85	83		2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 및 소송관리 사업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계약 소송관련 변호사 착수금이고, 농업기술센터 과수품질 향상과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태풍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391)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257		98,260	
명 시 이 월	119	148,719	51,974	명시, 사고이월 중복되는 사업있음
사 고 이 월	146	166,576	31,319	
계 속 비 이 월	26	21,655	14,967	

검 토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위치 미확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V 기금결산(결산서 p315)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㉒)=㉑-㉔	조 성 액(㉑)	사 용 액(㉔)	
계(8종)	13,133	160,243	161,016	772	173,377
식 품 진 흥 기 금	84	63	79	16	148
중소기업육성기금	6,547	-7	107	114	6,540
사 회 복 지 기 금	3,489	67	132	64	3,556
재 난 관 리 기 금	1,083	-2	18	20	1,081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1	1	7	6	500
옥외광고발전기금	283	25	26	1	309
체 육 진 흥 기 금	1,146	96	647	551	1,243
재정안정화 적립금		160,000	160,000		160,000

검 토 의 견

- 2019년 말 현재 기금은 8종으로 조성액은 173,37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1,016백만원이고, 사용액은 772백만원으로 160,243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유동적인 세입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이 큰 폭으로 증대 시 적립하고 하락할 때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및 대규모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경상일반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 순환 반복하였기에 여유 재원 1,60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으며,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V 채권액결산(결산서 P511)

○ 회계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3,883,629	276,362	622,357	3,537,634
일반 회계	소 계	3,648,827	234,923	367,203	3,516,547
	학자대여금	3,487,827		326,310	3,161,517
	회 원 권	133,000		0	130,000
	주택융자금	28,000	23,417	0	51,417
	(저수기 순환차입금) 기타생활	0	211,506	40,893	170,613
기금	사회복지기금	234,802	41,439	255,154	21,087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3,883,629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276,362천원이 발생하고, 622,357천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537,634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234,802천원, 보증금채권 133,000천원, 융자금 채권 3,386,547천원으로 보증금채권은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및 저소득계층 주택 임대보증금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임.

VI 채무액결산(결산서 p519)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VII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79)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38,753,984 (89,863,551)	138,106,975 (89,903,284)	124,819,536 (70,394,448)	9,190,084 (15,518,631)	4,097,355 (3,990,205)	
일 반 회 계	134,400,912 (86,942,781)	133,753,903 (86,982,514)	121,123,593 (68,937,005)	8,618,533 (14,110,801)	4,011,777 (3,934,708)	
특별 회 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30,000 -	30,000 -	30,000 -	- -	
	의료보호기금	242,431 -	242,431 -	193,027 -	49,404 -	
	산업단지조성사업	120,000 (2,918,832)	120,000 (2,918,832)	105,076 (1,456,245)	(1,407,830)	14,924 (54,757)
	수질개선	3,960,641 (1,938)	3,960,641 (1,938)	3,367,840 (1,198)	571,551 -	21,250 (740)

※ 준비부담액은 89,903,284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65.09%에 해당함

※ ()내서는 준비 부담액임.

검 토 의 견

- 2019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38,106,975천원으로 예산액 138,753,981천원 대비 99.5%이고, 집행액은 124,819,536천원으로 예산액의 90.37%이며, 9,190,084천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준비부담액은 86,982,514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62.9%에 해당됨.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
-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급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간 합리적 재원배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재정 운용 투명성과 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19년도 총 세입액은 879,262백만원, 총 세출액은 673,600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05,662백만원임. 세입대비 23.4%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총 세입은 879,2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8,752백만원(15.6%)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88,873백만원(36.1%)이고, 보조금 159,426백만원(19.9%), 조정교부금 24,684백만원(3.1%), 지방세는 26,823백만원(3.4%), 세외수입은 21,789백만원(2.7%)으로 우리군 재정은 자체 재원(6.1%)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59.1%)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세출은 673,6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0,957백만원(48.8%)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90,118,398천원, 사회복지 110,825,268천원, 농림해양수산 93,017,174천원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일반 공공행정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160,000,000천원이 적립되어 460.4%가 증가 되었으며, 보건의

전년대비 1.2%가 감소하였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이나 시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으로 173,376,524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1,015,377천원이고, 사용액은 772,368천원으로 160,243,00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최근 5년간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14.8%p 낮은 편이며, 증가원인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적립된 것이다.
-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추진중에 있는 사업중 빼제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적 제약과 국외업체의 자재와 기술을 도입하여 시설을 설치한다는 어려움이 있어보이므로 마운틴 코스트 제작 설치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시행 가능한 부분은 협의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05,514천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서 징수방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